

예비사회적기업이 처음인, **당신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설명회

예비사회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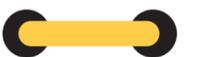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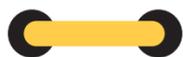
지정제도

자격요건

구비서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CHUNGNAM SOCIAL ECONOMY CENTER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개

기관명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흥예공원로 20 내포혁신플랫폼 3층
수탁기간	2023년 1월 ~ 2025년 12월
수탁법인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구성	총 15명(센터장 1, 팀장 4, 팀원10)
근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에 관한 조례 제 16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개

비
전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힘센충남의 동력

목
표

사회적경제의 전문화를 통한 '성과 고도화'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으로 맞춤형 '가치창출'

더 넓고 보다 깊은 '소통과 협력 활성화'

추
진
전략

사회적경제 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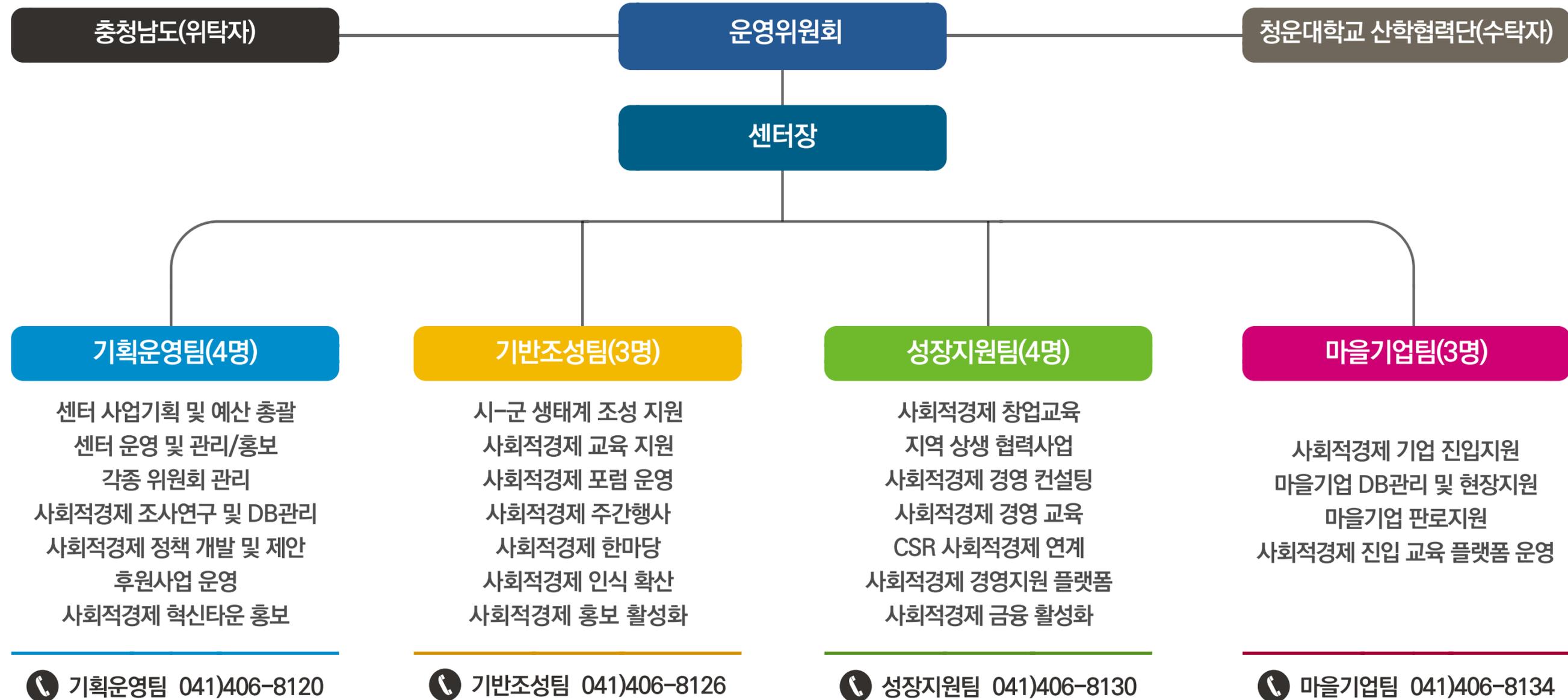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소통·협력 활성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개



CONTENTS



01 사회적기업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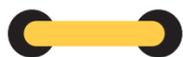
02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자격

03 심사 내용 및 절차

04 구비서류 준비 방법

05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06 접수기간 및 문의



01. 사회적기업의 이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부처형

지역형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마을기업

마을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협동조합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는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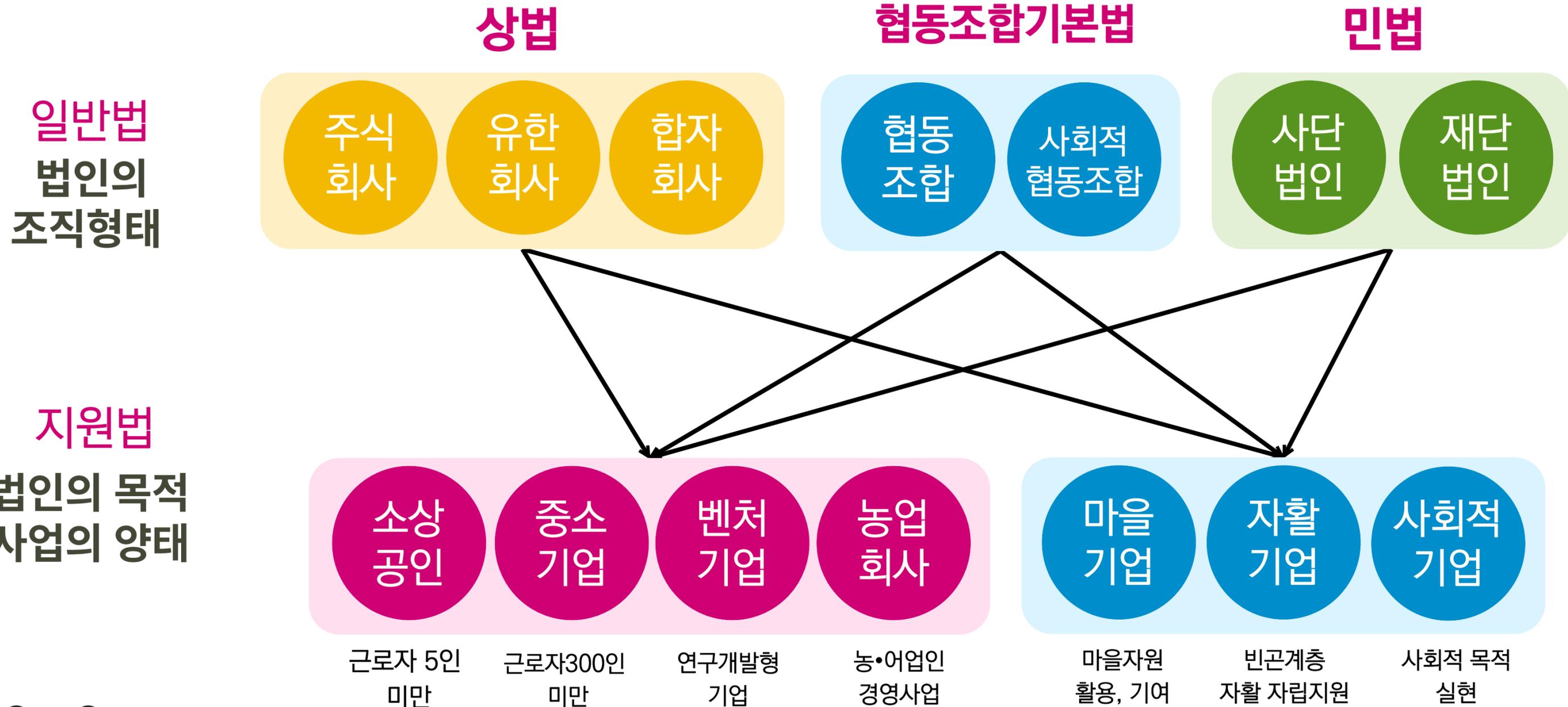
자활기업

사람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돕는 활동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표인 '국민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기업

사회적경제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 및 나눔의 재분배 원리로
움직이는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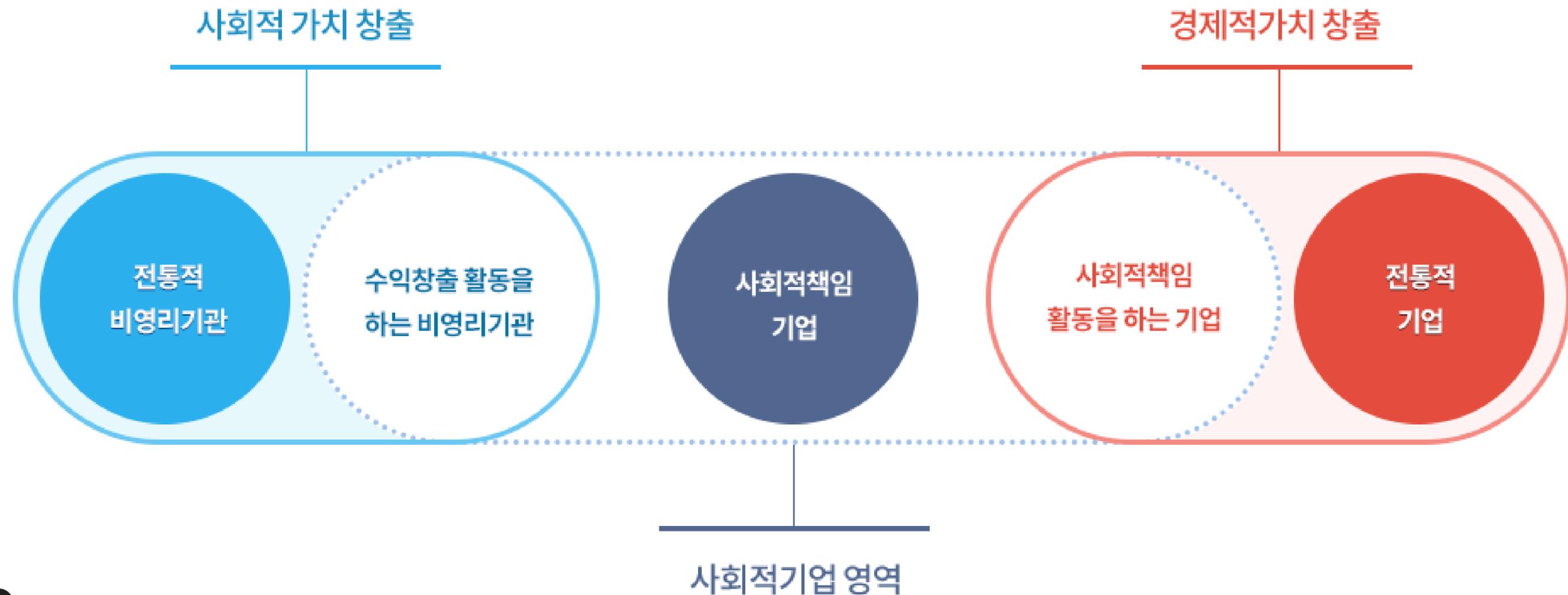


사회적경제기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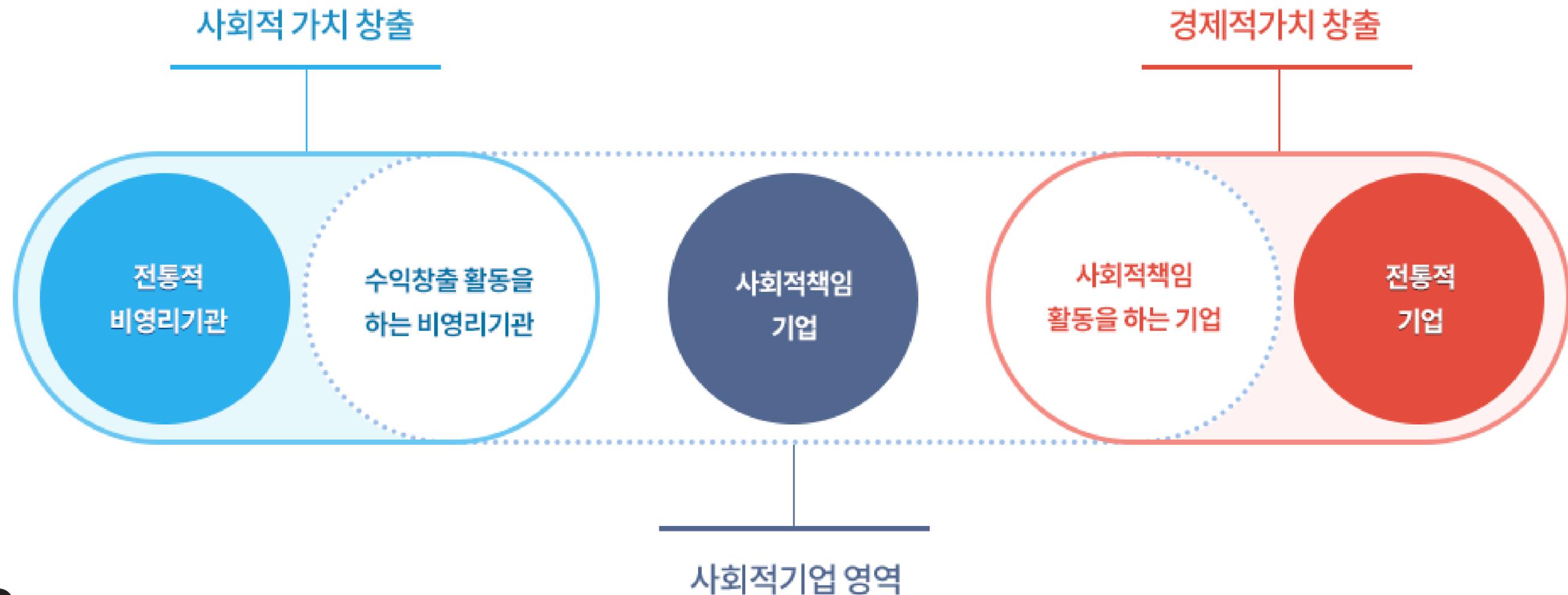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1항」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사회적기업 vs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사회적기업 vs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6. 정관·규약 등을 갖출것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상시접수

주관

광역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지정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요건

-

-

6.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신청

연중 일정 공고

지역형 vs 부처형

지역형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부처형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업

※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의로 소관부처 사업분야와 관련 있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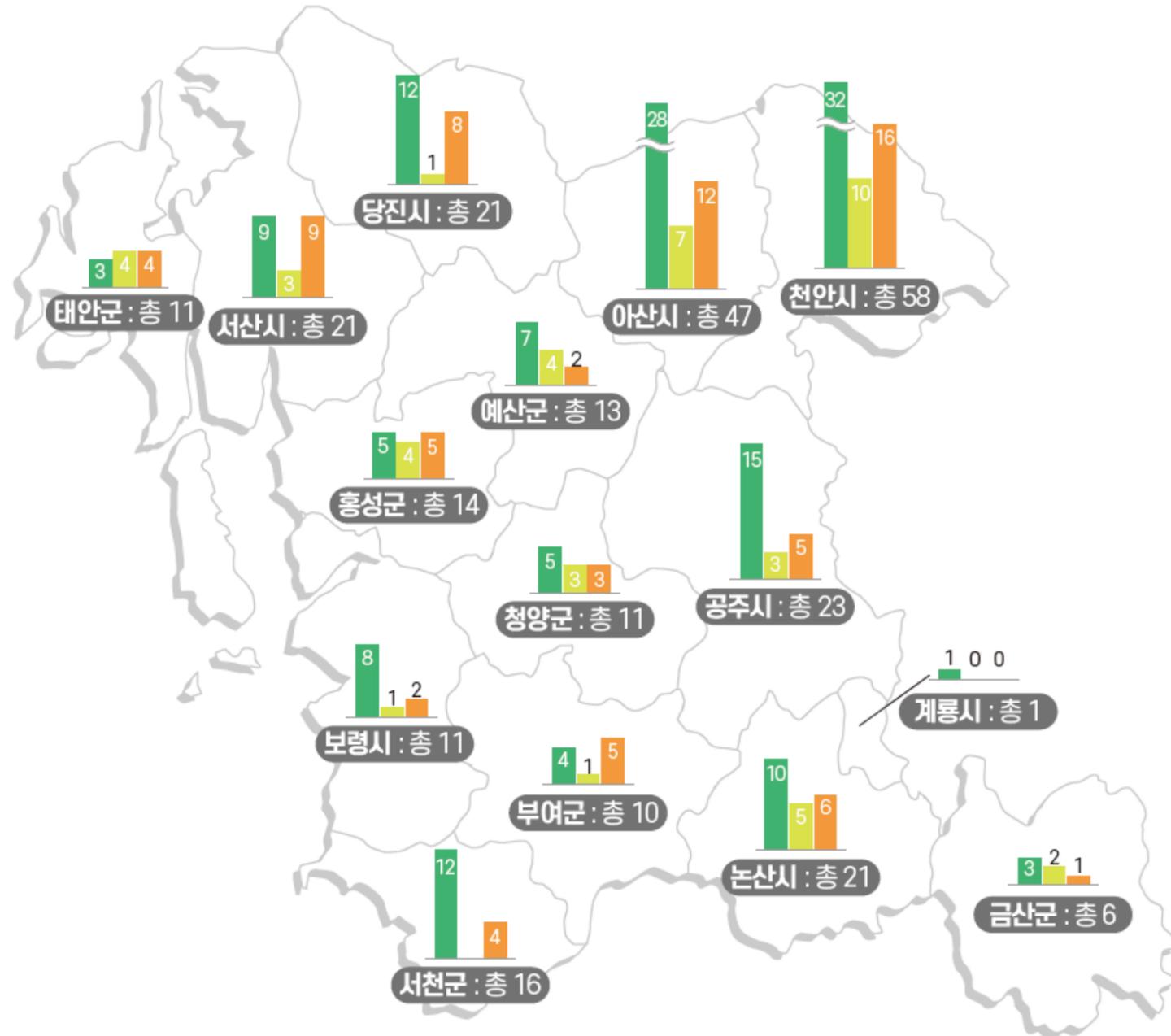
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정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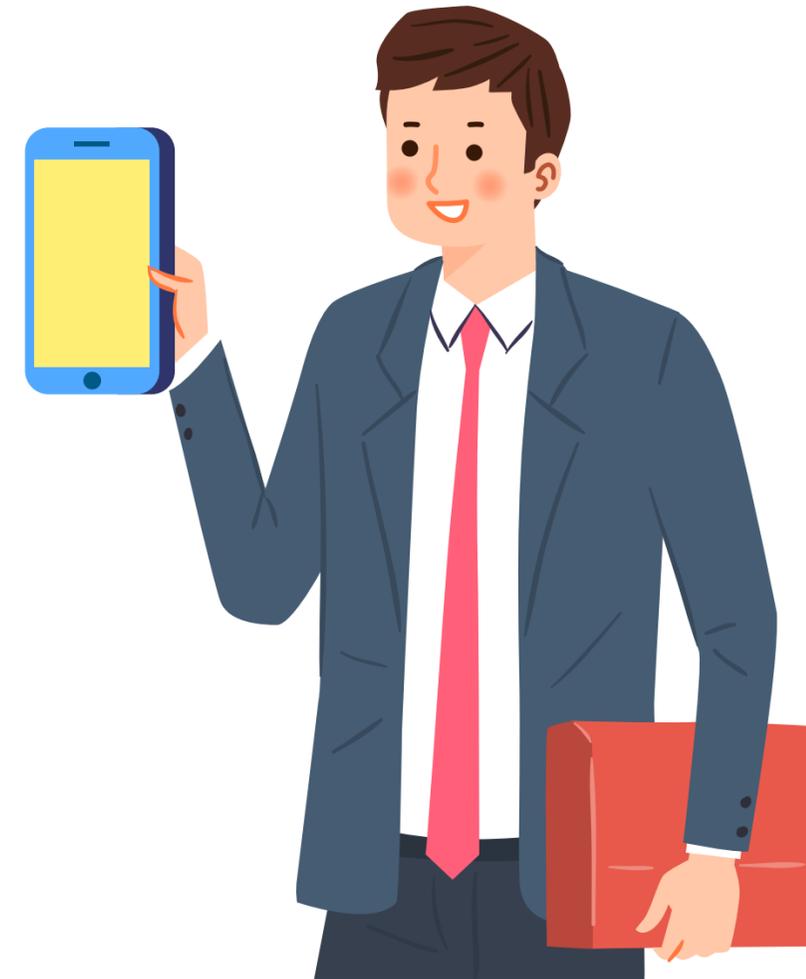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중 한가지로만 지정 가능하며, 부처형·지역형 중복 지정 불가능
- ※ 예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타 부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불가능하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도 지정 불가능

충남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총계

● 소계 | 284 ● 인증 | 154 ● 예비(부처형) | 48 ● 예비(지역형) | 82



02.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자격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영업활동

배당사용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사단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주식회사

국세기본법

재단법인

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유한회사

제13조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농업(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법인으로 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합명회사

단체" 등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도 해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의 사업 유형은 아래 **5가지 유형**에 해당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지역사회 공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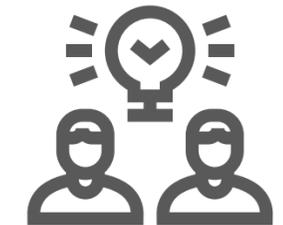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판단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
각 유형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이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사회적 목적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필수요건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text{취약계층 수혜비율} = \frac{\text{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text{전체(일반인+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 \times 100$$

유의사항

-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취약계층의 범위에 따름
- 사회서비스제공실적의 판단 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 인원, 시간, 횟수 등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일관된 증빙 단위로 실적을 제출해야 함.
- 수혜자 개인별로 취약계층 여부 확인 및 증빙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수혜자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연계 기관을 통해 확인

사회적 목적 사회서비스 제공형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어르신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고령자 대상 건강교실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사회적 목적 일자리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필수요건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근로자가 1명인 경우 취약계층이어야 하며, 신청 직전월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text{취약계층 수혜비율} = \frac{\text{매월 말일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수의 합}}{\text{매월 말일 기준 전체 근로자수의 합}} \times 100$$

유의사항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등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 취약계층 의무 고용 비율(30%)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찰은 일자리 제공
※ 관찰은 일자리: ①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설립인가증, 정관, 현장실사를 통해 사실 확인

사회적 목적 일자리제공형

발그레 사회적협동조합



- 장애인 고용을 통한 비누 제조 사업
- 장애인 직업 체험 프로그램
- 장애인, 장애인 가족 여행 서비스



사회적 목적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공헌형 (가)형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함

필수요건

-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의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의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유의사항

-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지역 내 프로보노 활동,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자원 연계 가능
- 단, 지역 내에는 기업 본사만 있고, 실질적 생산 공장이나 영업시장을 타 지역에 위치한 경우 불인정
- 사업 추진이 지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기술

사회적 목적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공헌형 (나)형은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함

필수요건

- 지역의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와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 설정
- 지역 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지출된 비용 또는 수입이 동 기간 **기업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

유의사항

-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 이에 대한 접근과 인식 이유 및 해결 방법 등이 구체적이어야 함.
- 의제 설정 및 해결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 차별화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사회적 목적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공헌형 (다)형은 지역의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을 지원을 목적으로 함

필수요건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출된 비용 또는 수입이 동 기간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

유의사항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란(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말함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성격에 맞는 컨설팅 기법을 개발, 적용하여 해당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실적 제출

사회적 목적 지역사회공헌 (다)형

(주) 청그라미



하나의 결승점을 둔 경쟁이 아닌,
무한개의 다양한 삶의 방향

사회적기업 청그라미
좋아요 464개 · 팔로워 477명

메시지 보내기 좋아요 검색

-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 지역문제 해결하는 청년 지원
-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사회적 목적 혼합형

혼합형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필수요건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함.

유의사항

- 실적 인정과 관련한 산정 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관찰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사회적 목적 혼합형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



-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 인성/진로교육, 집단상담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사회적 목적 창의·혁신형

창의·혁신형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

필수요건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공정무역 등 사업 특성상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다만, 다음과 같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지정이 가능

〈예시〉

- ✓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으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 (취약계층 편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유·무형의 콘텐츠를 생산, 개발, 제공
- ✓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성) 일반 영리기업과는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
- ✓ (기타 지역사회 공헌 등) 기차 지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의사항

- 조직의 설립 취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 방식, 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 정도, 지역 사회 기여 및 공헌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해당 유형으로 신청할 수 없음
-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 활동(지역 사회 기부 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에 해당하지 않음

사회적 목적 창의·혁신형

함께그린협동조합



- 탄소중립, 제로웨이스트 사업
- 자원순환 활동가 양성
- 제로웨이스트샵 운영(불당동 꼭꼭가게)
- 못난이 농산물 활용 비건디저트 개발
- 친환경 테마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친환경 상품 판매

영업활동의 수행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필수요건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유급근로자의 고용과 매출이 발생은 필수 요건은 아님

유의사항

-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부분 참고

배당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필수요건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 및 정관에 명시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 ※ 정관 구성은 공고일 이전, 정관 공증은 접수 마감일까지 완료해 제출한 경우에 인정*

유의사항

- “배분가능한 이윤”이란 한 회계기간(당해연도) 동안의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를 나타내 주는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산정하며, 손익계산서상 항목인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적립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
- 배분 가능한 이윤은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
 -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사업 *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등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사업 관련 현행법 위반시 지정하지 않음

필수요건

-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률
 -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 ✓ 적용기준: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 예시('24.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4.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
(단,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예시('24.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4.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s://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4시간)
 - ※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정관 및 규약 구비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춰야 한다.

필수요건

- 목적: 취약계층 일자리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주된 사회적 목적을 명시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수익금 사용, 이익배당 등의 사항 기재 및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조항 필수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 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적 기금에 기부한다는 사항 명시

유의사항

- 필수 사항이 기재된 정관은 반드시 공증 받아야 함.
※ 단,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우 공증 불필요

03. 심사내용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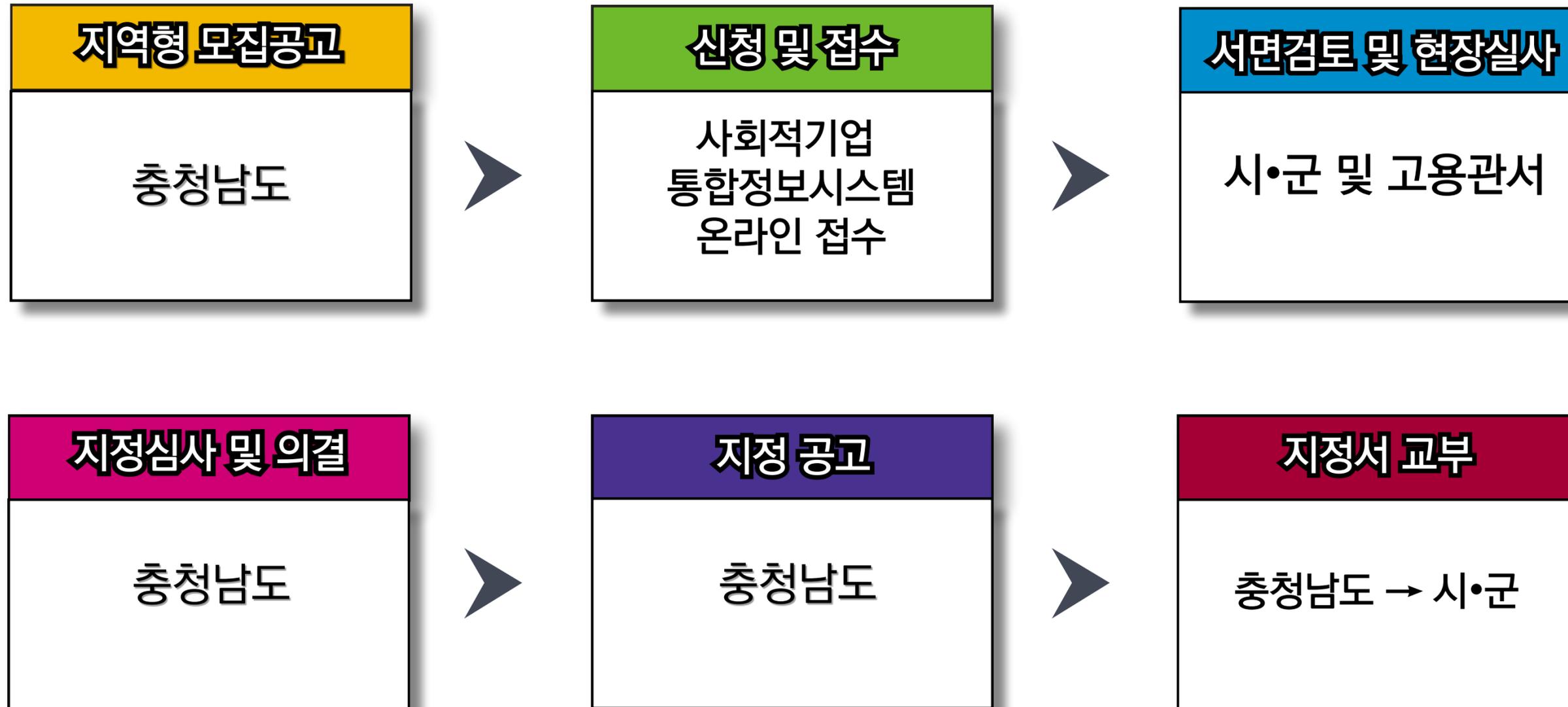
지정절차

신청제한

준수사항

지정취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신청 제한 사항

1 2년 이내에 3회 이상 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 (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횡수 기산방법: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합산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신청 제한 사항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4**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준수 사항

0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유지

02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지정 후 3개월 이내)

03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04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지정 취소

0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 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02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03

지정 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04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04. 구비서류 준비 방법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기타사항

예비사회적기업 구비서류

- 1 「지정 신청서(별지1)」,
-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2)」

- ①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 ②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 ③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④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예비사회적기업 구비서류

- 1 「지정 신청서(별지1)」,
-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2)」

⑥ 정관·규약 등 ※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⑧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⑨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신설>

⑩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⑪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05. 통합정보 시스템 이용 방법

회원가입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Seis.or.kr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정책소개', '현황·성과', '사업신청', '소식·자료', and '고객센터'. A search icon and a menu icon are also present. The main banner features a large title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안내' (2024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Application Notice) with a sub-header '1차 접수기간 2024. 02. 05. 월 ~ 02. 29. 목 18시' (1st Application Period: 2024. 02. 05. Mon ~ 02. 29. Thu 18:00). Below this, it states '신청방법 로그인 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통해 온라인 신청' (Application Method: Online application through the integrat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after login). There are two small notices: '*임시저장이 아닌 최종 제출 건만 신청으로 인정이 됩니다.' and '*마감일에 신청기업이 몰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elow the banner is a row of service icons including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온라인교육 플랫폼', 'e-store 36.5+', '협동조합 정보포털', '사회적가치지표 (SVI) 측정', '증명서 발급',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and '성장지원센터 대관'. At the bottom left, there is a '공지사항' (Notice) section with a table of recent announcements. At the bottom right, there are two smaller banners: one for '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안내' (System Access, Membership, Login Guide) and another for the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안내' (2024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Application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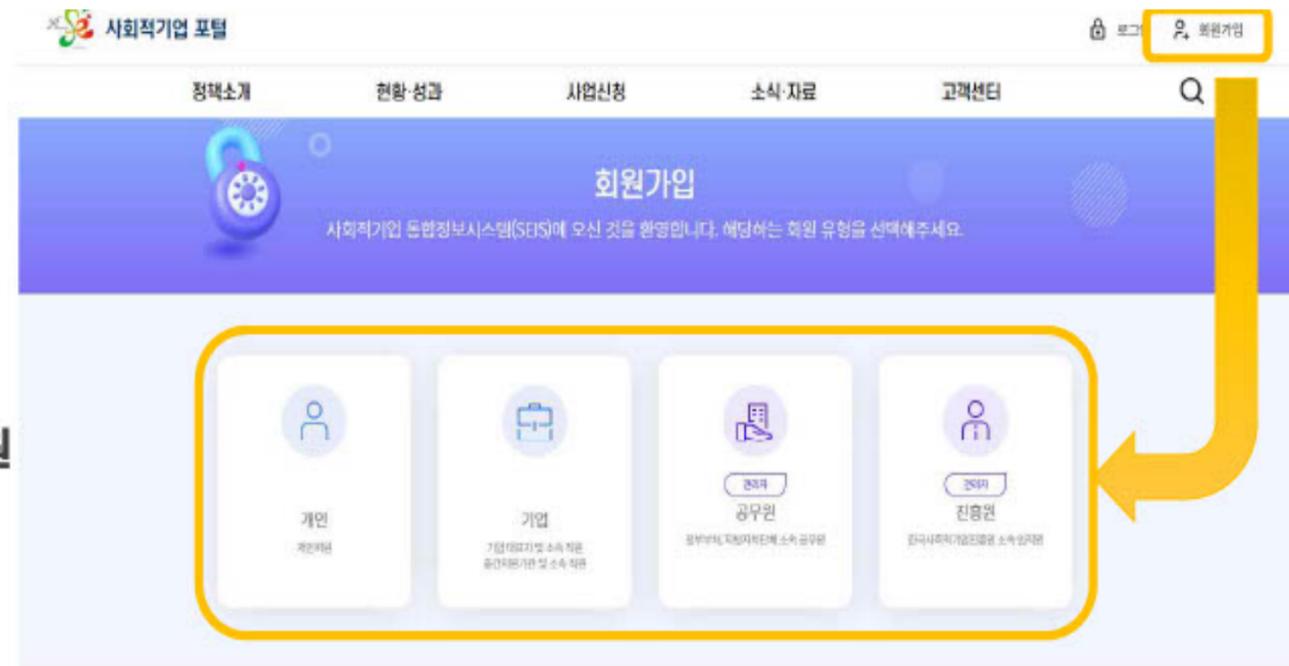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회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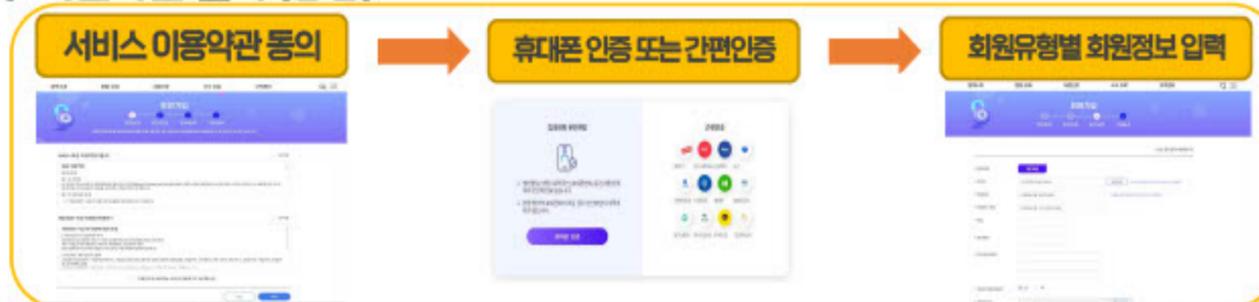
1) 회원가입 클릭하여 **회원가입** 화면으로 전환

2) 회원유형 선택

- ① **개인** : 개인회원
- ② **기업** : 기업대표자, 소속직원, 중간지원기관 및 소속직원
- ③ **공무원**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④ **진흥원** : 진흥원 소속 임직원



3) 회원가입 절차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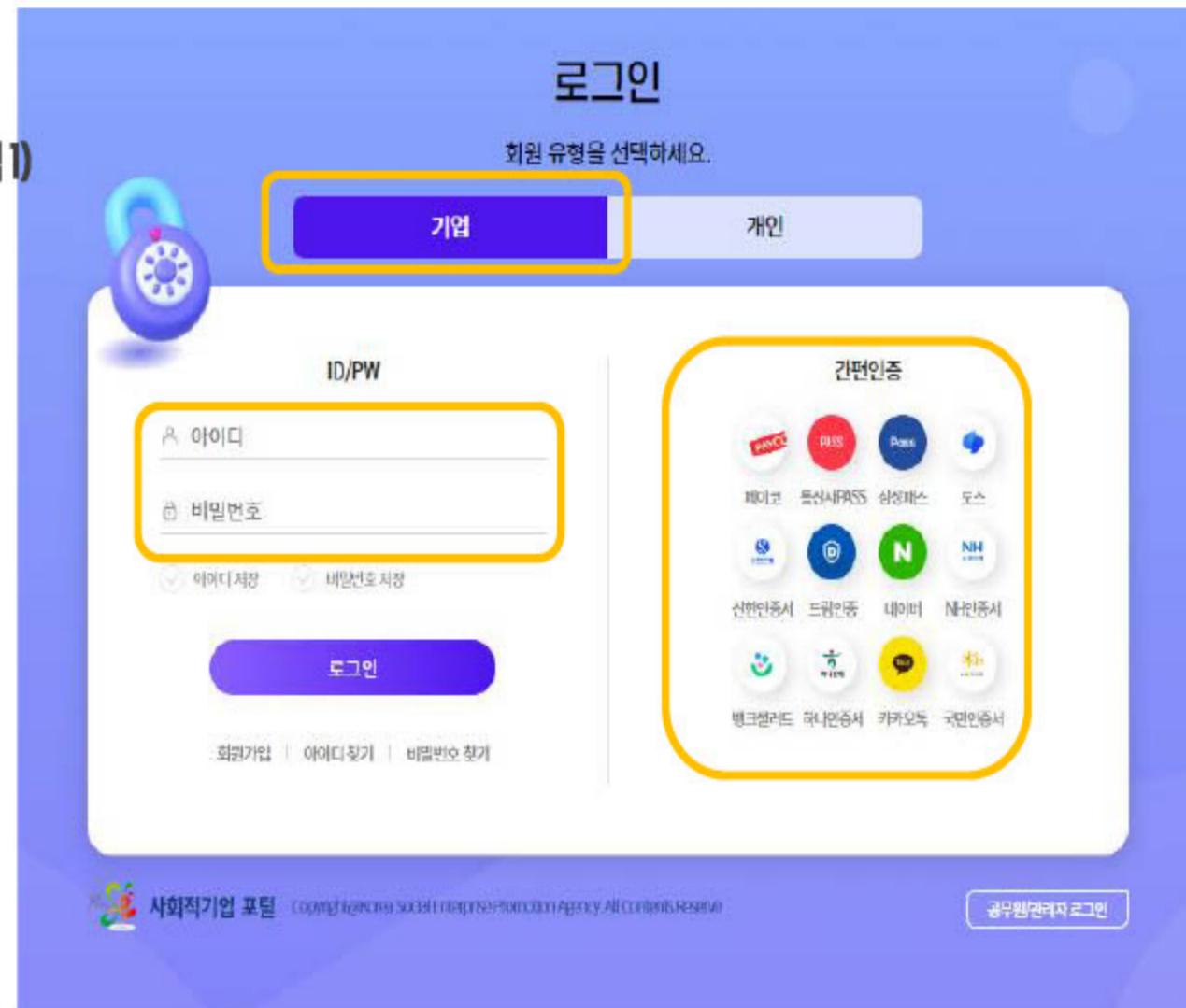


- 회원가입 시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인증 진행
- 회원가입 정보는 회원 유형별로 입력정보가 상이함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회원가입

- 1) 회원 유형은 기업으로 선택
- 2) 기업회원 로그인 방법 (2가지 방식중 택 1)
 - ①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② 간편인증 방식 선택 후 로그인
- 3) 간편인증 로그인은 사회적기업 포털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기업대표자의 **기업인증서** 로그인 기능은 추후 제공 예정(별도 공지)



로그인
회원 유형을 선택하세요.

기업 개인

ID/PW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 저장 비밀번호 저장

로그인

간편인증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사회적기업 포털 | Copyright © 2024 Chungnam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All Contents Reserved

공무원관리자 로그인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회원가입

4.1. 사회적 기업 인증·지정 > 인·지정 공고

1)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메뉴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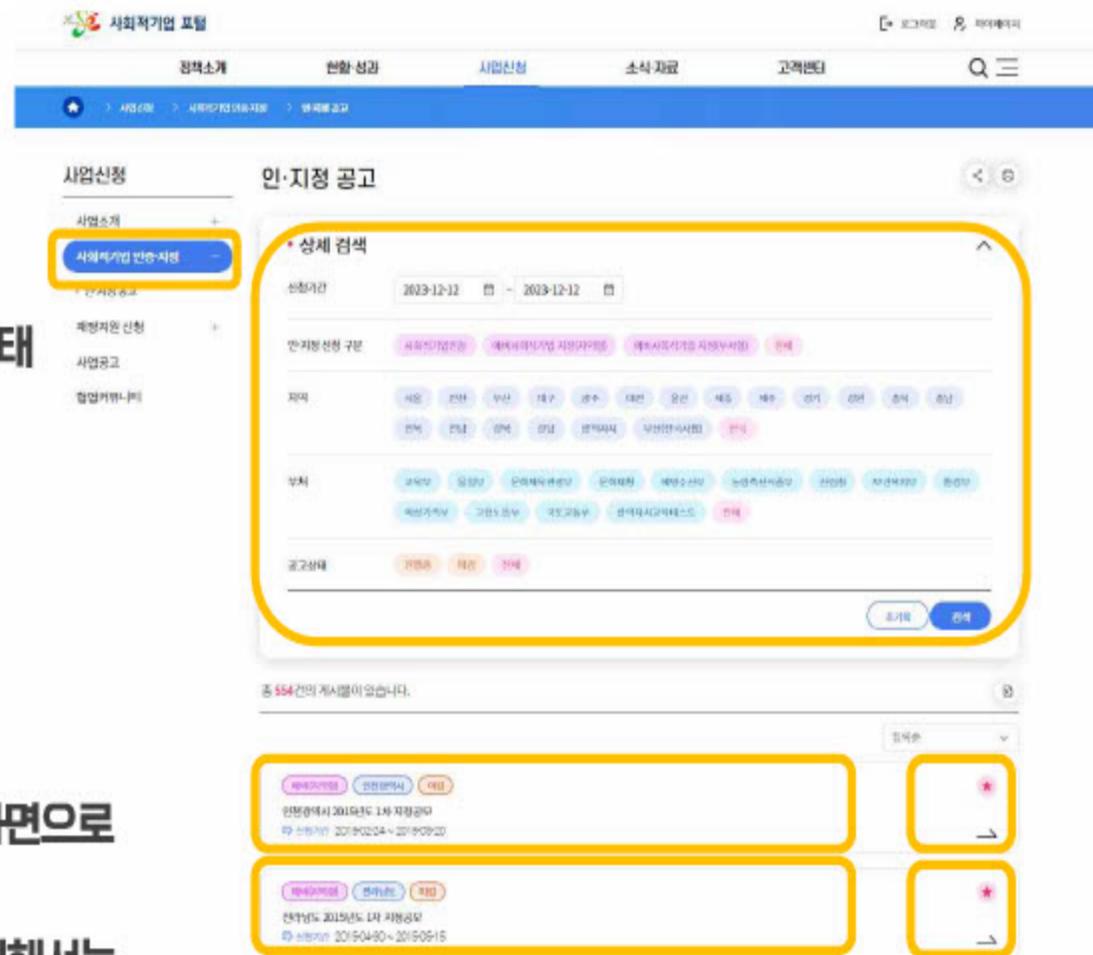
2) 상세검색 조건 선택 후 검색

- ① 신청기간, 인·지정 신청구분, 지역, 부처, 공고상태
검색 조건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공고 검색

3)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 공고 확인

4) 검색결과 선택

- ① → 리스트에서 클릭 하면,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 시스템의 신청하기 화면으로 이동
- ②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포털에 로그인 되어 있어야 함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기존 PDF입력 방식을 WEB입력 방식으로 전환

AS-IS PDF 방식

Web 전환

TO-BE

인증신청서 | 구비서류 첨부 | 발급내역조회

인증신청서

* 필수(필수사항) 2023년도 4차 평가 결과

신설기업명: [필수사항] [별첨 제1호서식] <개정 2015.7.17.>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전에, 해당사항 여부를 나온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관리번호: [필수사항]

신청인

조직형태

인증신청서

인증신청서 기내 목록

인증신청서 기내 목록	신청인	조직형태	신청일	신청내역	신청상태	신청비율	신청비율	신청비율
제1호서식(기업실적) 첨부서류	신청인	조직형태	신청일	신청내역	신청상태	신청비율	신청비율	신청비율
제2호서식(기업실적) 첨부서류	신청인	조직형태	신청일	신청내역	신청상태	신청비율	신청비율	신청비율
제3호서식(기업실적) 첨부서류	신청인	조직형태	신청일	신청내역	신청상태	신청비율	신청비율	신청비율
제4호서식(기업실적) 첨부서류	신청인	조직형태	신청일	신청내역	신청상태	신청비율	신청비율	신청비율
제5호서식(기업실적) 첨부서류	신청인	조직형태	신청일	신청내역	신청상태	신청비율	신청비율	신청비율

인증신청서 접수중 확인 | 인증신청서 확인

인증신청서 제출

인증신청서 접수 | 인증신청서 확인 | 인증신청서 제출

05.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문의

상담문의

접수기간 및 방법

- ▶ 접수 기간: 상반기 / 하반기 1회
- ▶ 신청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웹주소: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 ▶ 접수 문의: 시·군 담당 부서
- ▶ 문 의 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예비사회적기업 담당자 (☎ 041-635-3324)
- ▶ 상담 문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041-406-8134)

Q & A

Q. 법인의 대표가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 사업을 운영할 경우 거래관계, 근로자 혼재여부, 소재지 등을 확인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Q. 개인사업자의 사회적 목적 활동을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시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부터 실행한 사회적 목적 활동만 해당됩니다.

Q. 사실확인서 작성 시 취약계층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합니다.

Q & A

Q.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기업 정보 변경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① 기관명
- ② 소재지
- ③ 대표자의 성명
- ④ 지정유형 및 조직형태
- ⑤ 사업자등록번호

- 자치단체장은 소재지 변경 등 지정내용 중 신청사항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변경신청 하도록 시정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다만, 해당기업이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함

Q & A

Q. 사회서비스 제공에 물품 기부도 포함이 되나요?

- 아닙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이란, 단순히 물품 기부가 아닌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수혜자인 취약계층에게 직접 도달해야 합니다.

Q.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때, 꼭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야 하나요?

-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단계를 생략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바로 인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역사회 공헌형의 지역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역은 신청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시·군·구 등 특정한 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1천만원이내 ○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50%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63개소('23년) 	-	○
시설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
세제지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모태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9개 조합, 558억원 규모) 	○	○

사회적경제로의 진입을 환영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여정. 지금바로 시작해요!

궁금한 게 있을 땐 언제든지 **마을기업팀** 을 찾아주세요!

cb@cse.kr

충남내포혁신플랫폼 3층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CHUNGNAM SOCIAL ECONOMY CENTER

